

보도 일시	<b>배포 즉시</b>	배포일	2022. 4. 26.(화)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영숙 (043-719-4051)
		담당자	사무관 김행열 (043-719-4058)

## 식약처,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협력 강화 -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갱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4월 26일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합니다.

\* A업체 월평균 배달앱 주문 건수: ('16) 1,070만 → ('20) 5,700만 → ('21.8) 1억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요기요(위대한 상상, 대표 강신봉)

○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 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 그간 식약처는 ①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 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②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③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점 배달플랫폼·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업무협약서 내용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우아한형제들, (유)위대한상상 간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유)위대한상상(요기요)(이하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업무)**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1.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에 제공한다.
2.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식약처에서 제공되는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음식점의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3.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 위생등급 지정 정보 표시 등을 상호 협력한다.
5.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배달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력방식)** 식약처는 식품안전 주무부처로서,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배달앱 운영업체로서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업무의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협력기간)** ① 본 협약은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의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양 기관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④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효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식약처와 배달 플랫폼 중개업체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배포·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 ① 본 협약의 세부사항 추진 등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장 김 강 립

**우이한행씨들**

대표 김 범 준

**위대 한쌍쌍**

대표 강 신 봉

## 붙임 2

##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영숙 (043-719-4051)
		담당자	사무관	김행열 (043-719-4058)
담당부서 <안전관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오규섭 (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남백상 (043-719-2054)
담당부서 <위생등급제>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책임자	과 장	김성일 (043-719-2101)
		담당자	사무관	김윤정 (043-719-2102)